

대한육상연맹 미래국가대표 전임감독 채용 공고

(사)대한육상연맹에서는 미래국가대표 전임감독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지도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 모집개요

모집분야

선발종목	분야	선발인원	지원자격
중장거리, 경보	육상 미래국가대표 전임감독	1	- 대한육상연맹 지도자로 등록된 자 -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국가대표 지도 경력 2년 이상 또는 체육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- 미래국가대표 육성지원을 위한 장기 해외 파견 가능자 - 유급직장을 겸직하지 아니한 자.(무보수 명예직 제외)

담당업무

- 미래국가대표 우수선수의 발굴, 추천 및 선발관리
- 미래국가대표 중·장기 육상 계획 수립 및 이행
- 미래국가대표의 국내·외 훈련 계획수립 및 추진, 평가관리
- 미래국가대표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, 경기력 향상도 평가 및 자료관리
- 육상 국가대표 선수 훈련 지원
- 각종 강습회 및 세미나 의무 참석
- 해외 육상 선진국 파견 우수선수에 대한 현지 지원 및 관리
- 기타 육상 미래국가대표의 양성 및 경기력 향상에 관계되는 사항 등.

근무조건

구 분	분 야	계약기간	급 여	근무장소
계약직	전임감독 (중장거리, 경보)	계약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	대한체육회 지급규정에 따름	대한육상연맹에서 지정한 장소

※ 규정에 따른 기타수당 지급

결격사유

- 기타사항 참조

2 제출서류 및 일정

제출서류 및 제출기한

구 분	내 용	제출기한(비고)
제출방법	담당자 이메일 제출(hayong0@kakao.com) ※ 제출 시 제목을 '육상 미래국가대표 전임감독 지원자 000'으로 제출	2026. 3. 12.(목) 18:00까지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지원서 1부(지정 양식)** 2)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** 3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) 지도자 경력증명서 1부(전, 현 소속 발행) 5) 지도자 실적증명서 1부(대한육상연맹 발행) 6) 경기실적증명서 1부 7) 육상지도자 교육/강습회 이수 관련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 8) 국가대표 지도 경력 및 국가대표 후보 지도 경력 제출(해당자에 한함) 9) 개인정보수집·활용동의서 1부(지정 양식) 10) 프레젠테이션(PPT) 자료** 11) 신체검사서(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) 1부 12) 주민등록초본 1부 13) 사진(최근 1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 명함판) 1매 	11, 12, 13번은 최종합격 후 제출

(**)항목 하단 별도 안내

□ 서류제출 유의사항(**)

지원서	- 붙임 지원서 양식으로 작성(기타 양식 불인정)
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	- 2급 전문지도자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<u>국가 대표지도확인서</u> 또는 <u>체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증명서 사본</u> 제출(모집분야 항목 참조)
프레젠테이션(PPT) 자료	- 주제: 2026 미래국가대표 운영 계획 - 내용 1) 본 공고 '담당업무'에 명기된 전임감독의 직무 내용에 맞추어 작성 2) 지원자의 지도 철학 및 스포츠 과학(생리학, 역학, 심리학 등) 이론을 포함하여 미래국가대표 (꿈나무선수, 청소년대표, 국가대표후보선수)에 대한 비전 및 운영 방안 제시 *지원자가 선호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*서류전형 합격자는 제출한 자료로 면접전형 시 발표 진행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0분)

□ 전형일정

구 분	일 정
채용공고(서류접수)	2026. 2. 19.(목) ~ 3. 12.(목), 21일 간
면접전형(PPT 발표)	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연맹 홈페이지 게시
최종 합격자 발표	개별통보 및 본 연맹 홈페이지 게시
근무기간	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

※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 기타 유의사항

○ 결격사유

-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, 시도·시군구종목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(이하 “체육단체 등에서”라 한다)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
 - 체육단체 등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
 - 체육단체 등에서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(다만,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히 전임감독이 될 수 없다.)
 - 체육단체 등에서 승부조작,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·향응수수) 훈련비 횡령, 강간·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
 -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- 나.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-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(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1천만원 초과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- 나.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- 대한육상연맹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
-

○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,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합격은 취소되며, 작성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담당자: 대한육상연맹 이하용 대리, 02-414-3032/3)